학교법인 영남학원

2025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명	2명
재적임원	7명	2명
참석임원	7명	2명

1.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4:00~18:15 (회의소집통보일: 2025년 12월 8일)

2.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의관 4층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이사(7명): 한재숙, 이인호, 김진삼, 최외출, 김흥대, 김양수, 최경환

감사(2명): 김영혜, 이성수

○ 결석임원

이사(0명)

감사(0명)

○ 배석자

김성철(법인 기획조정실장), 이주형(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박순지(영남대학교 총무처장), 김용대(영남대학교의료원장), 이준(부속병원장),
서완석(영남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박삼국(영남대학교의료원 사무처장),
이원재(영천병원장), 이재용(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이종락(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4. 안건

<의결사항>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승인의 건

제3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한 재 숙	이 사	최외출	이 사	김흥대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 승인의 건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7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18호의안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승인의 건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 승인의 건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2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제 1 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제 2 호 영남대학교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의 건

제 3 호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현황 보고의 건

5. 회의내용

의 장: 재적이사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1]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승인의 건

의　　장: **제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2]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신청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겸직을 허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겸직허가 신청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처분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예정금액 (단위 : 원)	매수자
			전체	처분		
1		답	12㎡ (3.63평)	12㎡ (3.63평)		대구광역시 달성군
2		답	51㎡ (15.43평)	51㎡ (15.43평)		
합계			63㎡ (19.06평)	63㎡ (19.06평)		

의　　장: 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처분대상 기본재산의 소재지와 처분예정금액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3]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4]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5]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6]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7]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8]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흥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9]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흥대 이사의 동의와 김양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0]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흥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1]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안)의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2]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1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박순지 영남대학교 총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박순지 영남대학교 총무처장: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 (점)	취득금액 (원)	장부금액 (원)	비고
기계기구류	231	5,022,816,801	2,904,088,940	RIS사업종료에 따른 무상양여 168점 포함
집기비품류	33	533,627,900	263,610,472	RIS사업종료에 따른 무상양여 27점 포함
계	264	5,556,444,701	3,167,699,412	

의　　장: 제1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3]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양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4]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홍대 이사의 동의와 김양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5]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7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7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박삼국 의료원 사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박삼국 의료원 사무처장: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 (점)	취득가액 (원)	잔존가액 (원)
의료기기	16	3,471,621,214	16,000
집기비품	27	1,409,307,000	27,000
합계	43	4,880,928,214	43,000

의　　장: 제1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7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8호의안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8호의안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원재 영천병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원재 영천병원장: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 (점)	장부금액 (원)	잔존가액 (원)
의료기기	3	46,601,000	3,000
계	3	46,601,000	3,000

의　　장: 제1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8호의안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김양수 이사의 동의와 김흥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보고사항>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영남대학교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다.

(16:36 김진삼 이사 퇴장하다)

의　　장: 제2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보고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고, 대내외 제반 여건과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에 계속 최선을 다하여 주도록 당부하다.

(17:03 김양수, 최경환 이사 퇴장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보고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호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현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3호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이원재 영천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이원재 영천병원장: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3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보고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고, 대내외 제반 여건과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에 계속 최선을 다하여 주도록 당부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3호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현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최원호	이 사	김진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보고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영남이공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중장기발전계획(안)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최석호	이 사	김홍대

의　　장: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7]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흥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8]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제9조 제1호의 결격사유는 정관과 동일하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의　　장: **제2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흥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개정원안을 다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이외의 내용은 개정원안대로 하여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현행	개정원안	개정원안 수정안
제 9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 9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 9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제2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9]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2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0]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　　장: 회의록 간서명 임원은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한재숙 이사장, 최외출 이사, 김홍대 이사로 선정한다고 하고,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최외출	이 사	김홍대

2025. 12. 17.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한 재 숙 한재숙

이 사 이 인 호 이인호

이 사 김 진 삼 김진삼

이 사 최 외 출 최외출

이 사 김 홍 대 김홍대

이 사 김 양 수 김양수

이 사 최 경 환 최경환

감 사 김 영 혜 김영혜

감 사 이 성 수 이성수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최외출	이 사	김홍대

[붙임1]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제1호의안 관련)

<table>
<tr><th>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5.06.18.</th><th>변경(안)</th><th>변경사유</th></tr>
<tr><td>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운영직 및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또는 <u>한정치산자</u>

2.~7. <생략></td><td>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운영직 및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7. <현행과 같음></td><td>민법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td></tr>
<tr><td>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u> 1·<u>2</u>·3·4-1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별표 4-2와 같다.</td><td>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u> 1·<u>2</u>·3·4-1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별표 4-2와 같다.</td><td>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조정</td></tr>
<tr><td><u><신설></u></td><td><u>부칙(2025.12.17.)</u>
<u>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u></td><td>부칙 신설</td></tr>
<tr><td>(별표2)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h>별정직</th></tr>
<tr><td>합계</td><td colspan="2">420</td><td>268</td><td>0</td><td>31</td><td>101</td><td>20</td></tr>
<tr><td>2급</td><td colspan="2"><u>7</u></td><td><u>7</u></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 colspan="2"><u>27</u></td><td><u>23</u></td><td>0</td><td><u>3</u></td><td></td><td><u>1</u></td></tr>
<tr><td>4급</td><td colspan="2"><u>53</u></td><td><u>45</u></td><td>0</td><td><u>6</u></td><td></td><td>2</td></tr>
<tr><td>5급</td><td colspan="2"><u>59</u></td><td><u>42</u></td><td>0</td><td><u>7</u></td><td><u>4</u></td><td><u>6</u></td></tr>
<tr><td>6급</td><td colspan="2"><u>90</u></td><td>52</td><td>0</td><td><u>8</u></td><td>24</td><td><u>6</u></td></tr>
<tr><td>7급</td><td rowspan="3"><u>99</u></td><td><u>37</u></td><td rowspan="3"><u>99</u></td><td>0</td><td>3</td><td><u>32</u></td><td><u>2</u></td></tr>
<tr><td>8급</td><td><u>33</u></td><td>0</td><td><u>2</u></td><td><u>28</u></td><td>3</td></tr>
<tr><td>9급</td><td><u>15</u></td><td>0</td><td><u>2</u></td><td><u>13</u></td><td><u>0</u></td></tr>
</table></td><td>(별표2)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h>별정직</th></tr>
<tr><td>합계</td><td colspan="2">420</td><td>268</td><td>0</td><td>31</td><td>101</td><td>20</td></tr>
<tr><td>2급</td><td colspan="2"><u>8</u></td><td><u>8</u></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 colspan="2"><u>31</u></td><td><u>25</u></td><td>0</td><td><u>4</u></td><td></td><td><u>2</u></td></tr>
<tr><td>4급</td><td colspan="2"><u>56</u></td><td><u>47</u></td><td>0</td><td><u>7</u></td><td></td><td>2</td></tr>
<tr><td>5급</td><td colspan="2"><u>64</u></td><td><u>47</u></td><td>0</td><td><u>6</u></td><td><u>6</u></td><td><u>5</u></td></tr>
<tr><td>6급</td><td colspan="2"><u>84</u></td><td>52</td><td>0</td><td><u>5</u></td><td>24</td><td><u>3</u></td></tr>
<tr><td>7급</td><td rowspan="3"><u>89</u></td><td><u>31</u></td><td rowspan="3"><u>89</u></td><td>0</td><td>3</td><td><u>25</u></td><td><u>3</u></td></tr>
<tr><td>8급</td><td><u>29</u></td><td>0</td><td><u>3</u></td><td><u>23</u></td><td>3</td></tr>
<tr><td>9급</td><td><u>28</u></td><td>0</td><td><u>3</u></td><td><u>23</u></td><td><u>2</u></td></tr>
</table></td><td>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조정</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겸직 허가 신청사항

(제2호의안 관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3]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제4호의안 관련)

현 행 개정 2025. 2.28. 직권 수정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0.00.	개정 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8. *(생략)*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8. *(현행과 같음)*	민법상 용어 변경에 따른 수정
<신 설>	**부칙(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4]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제5호의안 관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조명근		역사학과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6.3.1.~ 2031.2.28.	2026.3.1.
2	김상용		건축학부				
3	임지석		기계공학부				
4	우동균		전기공학과				
5	진현정		내과학교실				
6	천은진		정신건강의학교실				
7	이동규		재활의학교실				
8	전준현		생명공학과				
9	서혁준		산업디자인학과				
10	이미연		음악학부				
11	최창형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에 임함	2026.3.1.~ 2029.2.28.	2026.3.1.
12	안현철		파이버시스템공학과				
13	권성진		미래자동차공학과				
14	송유재		로봇공학과				
15	김소정		심리학과				
16	배상운		내과학교실				
17	박종일		내과학교실				
18	홍경수		내과학교실				
19	김아영		내과학교실				
20	김기범		정형외과학교실				
21	손휘승		정형외과학교실				
22	정아름		안과학교실				
23	김수홍		영상의학과학교실				
24	모종서		약학부				
25	김정환		약학부				
26	이성원		법학전문대학원				

※ 내과학교실 조교수 배상운(1편), 정형외과학교실 조교수 손휘승(3편)은 제출한 게재예정 논문이 2026.2.28.까지 게재(출간)되는 조건부로 재임용하고자 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5]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제6호의안 관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조명근		역사학과	부교수	교수에 임함	2026.3.1.~ 정년까지	2026.3.1.
2	김상용		건축학부				
3	임지석		기계공학부				
4	우동균		전기공학과				
5	손장원		내과학교실				
6	진현정		내과학교실				
7	천은진		정신건강의학교실				
8	이동규		재활의학교실				
9	전준현		생명공학과				
10	서혁준		산업디자인학과				
11	이미연		음악학부				
12	김기범		정형외과학교실	조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6.3.1.~ 2031.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6] 영남대학교 2026.3.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제7호의안 관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류정호		신소재공학부	부교수	교수에 임함	2026.3.1.~ 정년까지	2026.3.1.
2	이기백		화학공학부				
3	강석휘		내과학교실				
4	이근우		정형외과학교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7] 영남대학교 2026.3.1.자 교육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제8호의안 관련)

No.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박기홍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6.3.1.~ 2028.2.29.	2026.3.1.
2	홍윤경		교양학부				
3	최윤정		교양학부				
4	황태종		교양학부				
5	이윤정		교양학부				
6	장윤정		교양학부				
7	하귀룡		교양학부				
8	정은신		교양학부				
9	임수진		교양학부				
10	변인숙		교양학부				
11	김충현		교양학부				
12	정두희		교양학부				
13	이은영		교양학부				
14	김원준		교육대학원				
15	김정선		교육대학원				
16	박은정		교육대학원				
17	신지숙		교육대학원				
18	남미영		교육대학원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8] 영남대학교 2026.3.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

(제9호의안 관련)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서왕벽		기계공학부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6.3.1.~ 2028.2.29.	2026.3.1.
2	신기열		기계공학부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9]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제10호의안 관련)

□ 외국인교원 재임용 승인 요청 현황

가. 교육중점 외국인교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알렉스존슨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22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	파멜라맥케이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17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	프랑크레이노		유럽언어 문화학부	부교수	27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	로트닥마코넬리아		유럽언어 문화학부	부교수	16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	한우상		중국언어 문화학과	조교수	4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	앞잘아흐메드칸		국제개발 새마을학과	조교수	4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	얍얀판바스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조교수	4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	토마스듀버네이		교양학부	부교수	27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	테드미슐러		교양학부	부교수	22	부교수	2026.3.1.~ 2026.8.31.	2026.3.1.	
10	니콜라스페리토		교양학부	부교수	21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1	하비윌커슨		교양학부	부교수	15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2	제이슨페르난데즈		교양학부	부교수	15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3	애런애덜즈먼		교양학부	부교수	13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4	그렉레이노		교양학부	부교수	13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5	멧배일리스		교양학부	조교수	11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나. 교육·연구중점 외국인교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바너지나라얀		기계공학부	부교수	21	부교수	2026.3.1.~ 2027.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다. 연구중점 외국인교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직위	발령사항				비고(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수트립토마줌더		물리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2	베허남제이날 반드파르진		물리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3	비핀쿠마		물리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4	세이얘딘알데빌리 세이얘데바하레이		물리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5	리야퉁		물리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6	차바라마크리스나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7	라자아나말라이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8	아크탈무하마드 사이드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9	다나자야메룸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0	구투루라자 세카라레디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1	에스와란카마라즈		화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2	타쿠르다칼		생명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3	와지드자만		생명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4	라구라만		생명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5	티와리스랏다		생명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6	아야루시바산카란		건설시스템 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7	마니두라이		건설시스템 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8	막슈다쥬래바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19	벤카타레디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20	비니트쿠마르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2027.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직위	발령사항				비고(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21	루드라라주비 제이야락쉬미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2	릴라칸타레디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3	와카스울아리핀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4	뚜파쿠라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5	아람나지브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6	베디야판떠루말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7	푸지아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8	모드숲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29	라젠드란프라바카란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0	언누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1	괄라니사미 라지쿠마르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2	안발라간 사티쉬쿠마르		기계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3	와일알조비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4	샤우키압둘카림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5	시티파티마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6	차피크메리암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7	호세인미노에이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8	타히르쿠르셰이드		전기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39	나심하미드		전기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0	베드리칸난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1	라지아추단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2	바수데바레디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43	쿰마라마두수 다나라오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4	코야다가네쉬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5	마헨드라싱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6	에자베니사트야 무르티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7	아크바르모하마드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8	타파스만달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49	산타무르티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0	바나라즈람쿠마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1	산가라수사다시밤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2	파라오루모한레디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3	스라반띠버로고니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4	커시드아마드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5	라메쉬레디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6	라마순다람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7	라자람라자모한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8	마리아니티아셔린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59	아그라왈네하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0	미나치벤카타사미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1	바지샤익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2	라케시바스카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3	시바수브라마니디브야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4	팔라니사미고타미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차재순	이 사		이 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직위	발령사항				비고(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65	란지드쿠마르다만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6	라오라네차이 타냐제이프라카시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7	라제쉬할드하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8	마두루수니타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69	산무감비그네쉬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0	쿠푸삭티벨루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1	프라산타로이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2	모하마드아슬람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3	카림엠디레자울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4	모란칼프리 탐자가낫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5	알하마디살레		화학공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6	티루쿠마란 퍼리야사미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7	파르빈아스라프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8	사가마네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79	푸루조탐레디 봄미얼디		전자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0	찰라파시		전자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1	나셈무하마드		전자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2	푸로쇼탐레디		전자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3	아시라프임란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4	엠디압두스사마드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5	아민파르한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6	나우만알리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87	아가르왈사우라브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8	아딜이크발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89	프레틱고스와미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0	아난드쿠마르		컴퓨터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1	대염염		로봇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2	페다티물라푸네타		로봇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3	딩티깜뚜		경영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4	사지드알리		원예생명 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5	아데데지올루와세운		원예생명 과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6	비샬쿠마르		식품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7	가자난 아트마람보드케이		식품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8	라마찬드란비나야감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99	햄디아메드가버 모하메드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0	마틴누를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1	대니쉬우딘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2	아리아라케시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3	할릴아티프알리칸		생명공학과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4	누나구루프라카시		교양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5	아리사우드		교양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6	마네시예왈레		교양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107	아키네팔리바르가브		교양학부	조교수	-	조교수	2026.3.1.~ 2027.2.28.	2026.3.1.	

※ 조건부 재임용 11명 포함

1) 화학과 에스와란카마라즈, 2026.2.28.까지 2편중 2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 기계공학부 와카스울아리펀,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3) 건설시스템 아야루시바산카란,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4) 화학공학부 마헨드라싱,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5) 화학공학부 바지샤익, 2026.2.28.까지 2편 중 2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6) 화학공학부 프라산타로이,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7) 컴퓨터학부 엠디압두스사마드,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8) 컴퓨터학부 프레틱고스와미, 2026.2.28.까지 2편중 2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9) 컴퓨터학부 아난드쿠마르, 2026.2.28.까지 1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10) 경영학과 딩티깜뚜, 2026.2.28.까지 2편중 1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11) 생명공학과 마틴누를, 2026.2.28.까지 2편중 2편의 논문발간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임용 신청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0] 영남대학교 2026.3.1.자 외국인교원 신규임용(안)
(제11호의안 관련)

□ 신규임용 대상자 현황: 22명 (교육중점 1명, 연구중점 21명)

가. 교육중점 외국인교원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신규임용				국적	공동연구교수
				직위	호봉	임용기간	월급여(원)		
1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부교수	20	2026.3.1.~ 2027.2.28. (1년)			-

나. 연구중점 외국인교원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신규임용			국적	공동연구교수
				직위	임용기간	월급여(원)		
1	생명과학과	디비야		조교수	2026.3.1.~ 2028.2.28.(2년)			박선주
2	환경공학과	무하마드카심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최대희
3	기계공학부	아메드니아즈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김병일
4	기계공학부	바이리스리하리샤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임지석
5	신소재공학부	파틸샤라드 찬드라샤시칸트		조교수	2026.3.1.~ 2028.2.28.(2년)			김민재
6	신소재공학부	카이르나르 니키타아룬		조교수	2026.3.1.~ 2028.2.28.(2년)			김민재
7	신소재공학부	조티라비나그랄레		조교수	2026.3.1.~ 2028.2.28.(2년)			김민재
8	신소재공학부	테자스자드하브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류정호
9	전기공학과	바셈칸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이상봉
10	파이버시스템 공학과	에스펜티찬드라 세카르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안현철
11	전자공학과	알나산마나르		조교수	2026.3.1.~ 2027.2.28.(1년)			김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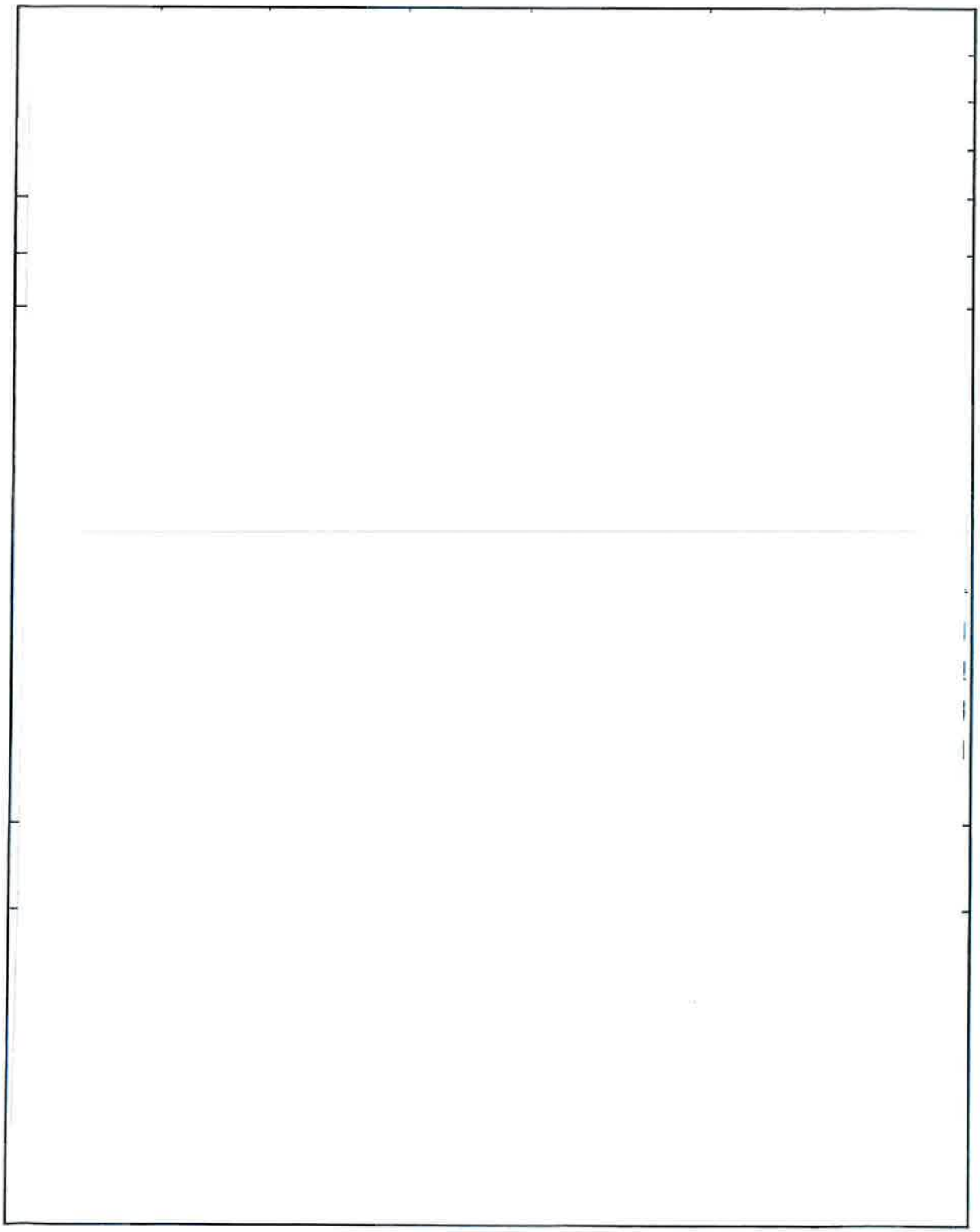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신규임용			국적	공동연구교수
				직위	임용기간	월급여(원)		
12	컴퓨터학부	굴말릭주나이드자미		조교수	2026.3.1.~2028.2.28.(2년)			박창현
13	컴푸터학부	파반쿠마르파이크라오		조교수	2026.3.1.~2028.2.28.(2년)			최권휴
14	컴퓨터학부	세하르샤자드파루크		조교수	2026.3.1.~2028.2.28.(2년)			최규상
15	컴퓨터학부	줄피카르알리		조교수	2026.3.1.~2028.2.28.(2년)			김성원
16	컴퓨터학부	모인알리		조교수	2026.3.1.~2028.2.28.(2년)			김성원
17	컴퓨터학부	무하마드지산잔디르		조교수	2026.3.1.~2028.2.28.(2년)			박창현
1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압둘파하드		조교수	2026.3.1.~2027.2.28.(1년)			박한우
19	원예생명과학과	나이묘윈		조교수	2026.3.1.~2028.2.28.(2년)			유진기
20	의생명공학과	볼살레프리탐바그완		조교수	2026.3.1.~2027.2.28.(1년)			문병산
21	의생명공학과	아지즈울라		조교수	2026.3.1.~2027.2.28.(1년)			문병산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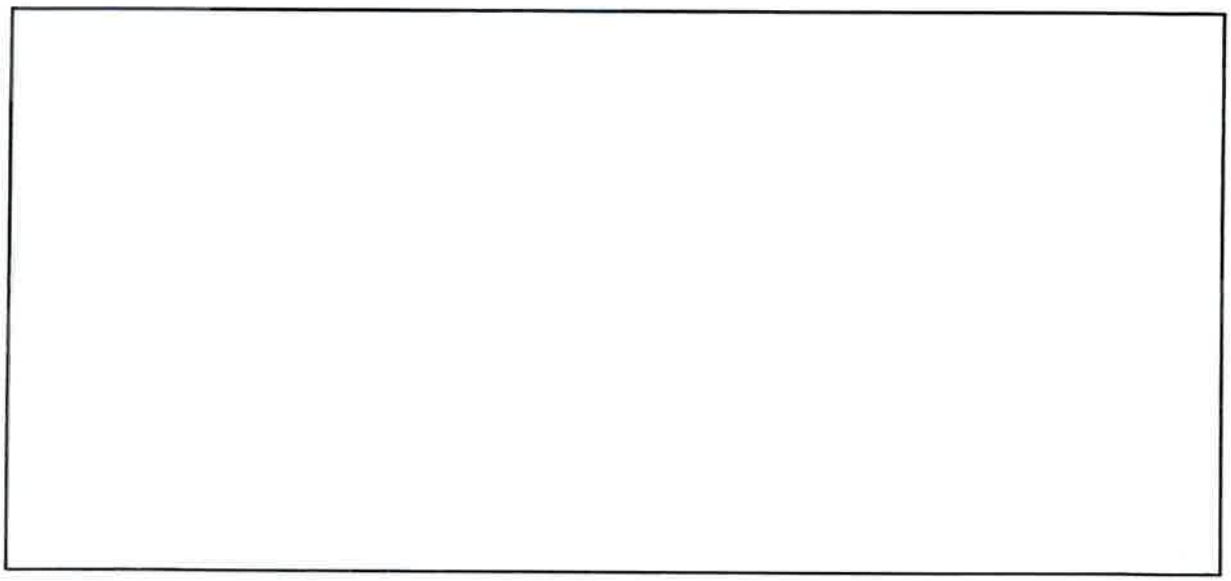
[붙임11] 영남대학교 전임교원(방○○) 징계의결요구서(안)

(제12호의안관련)



결재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최원호	이 사	김태범

간서명	이사장	한 재 숙	이 사	최 [illegible] 숙	이 사	[illegible] 훈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2]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1호 관련)

□ 교원 의원면직 현황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의원면직 현황

대학명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내역	발령일자	
영남 대학교	면직	김홍주		내과학교실	조교수	의원면직	2025.12.31.	
		류민중		영상의학과학교실	조교수	의원면직	2025.12.31.	

나. 외국인교원 의원면직 현황

대학명	임용 유형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내역	발령일자	
영남 대학교	면직	연구중점	무켈지알 카딥		건설시스템 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5.9.17.	
			니드히푸라닉		생명과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5.10.31.	
			사나이람		의생명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5.10.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3]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제14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5. 4. 16.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4. 6. 19.> 10. 기타 의료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10. (현행과 같음) **부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4]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제15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4. 8. 21.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조(봉급) ① (생 략) ② 운영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2**와 같다. ③ ~ ④ <생 략>	제7조(봉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2**와 같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행] (별표 2)

운영직 봉급표

1. 운전 · 시설 운영직

호봉\직급	운 영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 기타 운영직

호봉\직급	운 영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개정안] (별표 2) : 38호봉 신설

운영직 봉급표

1. 운전 · 시설 운영직

호봉\직급	운 영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 기타 운영직

호봉\직급	운 영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5]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제16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4. 8. 21.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전공의"라 함은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레지던트 직렬과 인턴 직렬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보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통상임금** **나. 휴도휴가비** **다. 법정수당** **라.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마. 의료원장이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바. 기타 의료원장이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등(특별상여금, 격려금 등)**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의료원 임금 지급 항목에 맞는 용어로 재정의
<신 설>	**2의2. "봉급"이라 함은 재직경력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을 말한다.**	호 신설
<신 설>	**2의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호 신설
<신 설>	**2의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3.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금을 말한다. **가. 봉급: 재직 경력기간 등에 따**	**<삭 제>**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에 따른 호 삭제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최병호	이 사	김홍기

라 지급되는 본봉 **나. 면허수당** **다. 기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용어 통일
제4조(지급일) **임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휴일이거나 특별한 행사관계로 정일 지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휴일이거나 특별한 행사관계로 정일 지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용어 통일
제5조(계산방법) **임금**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산방법)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용어 통일
제6조(계산기준) **① "통상임금"은 그 달의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기타 금품은 의료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 략)	제6조(계산기준) **① 보수는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용어 및 계산기준 재정의
제8조(휴직 기간 중의 **임금**) ①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직무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을 할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기간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만을 지	제8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용어 통일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용어 통일
제9조(병가 기간 중의 **임금**)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제9조(병가 기간 중의 **보수**) 병가 기간 중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용어 통일
제10조(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보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보수는**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용어 통일
제11조(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자의 **임금**) ①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정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3분의 1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자의 **보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용어 통일
③ 감봉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감봉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용어 통일
제13조(면허수당)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임금지급일에 별표2에 의하여 면허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면허수당) **①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2에 의하여 면허수당을 지급한다.** **② 면허수당은 지급월의 봉급지급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면허수당 계산기준 반영을 위한 항 번호 부여 및 신설
제14조(효도휴가비) ①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3에 의하여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제14조(효도휴가비) ①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②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익년 설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효도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이 **임금**지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익년 설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효도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있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용어 통일 용어 통일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최원호	이 사	김윤미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신설(안)
(제20호의안 관련)

1 기계·자동차융합대학 설치

기계·자동차융합대학

스마트융합기계계열		스마트e-자동차과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모집정원	138	모집정원	80

모집단위 현행과 같음

2 AI융합대학 설치

AI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과		사이버보안과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모집정원	70	모집정원	44

모집단위 현행과 같음

3 시행일자 : 2026.03.01.자

간서명	이사장	한재승	이 사	최 [illegible]	이 사	[illegible]

[붙임17]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제21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8.20.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신설>	제5조의18(AI-X 추진단) ① 총장직속으로 AI-X 추진단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AI-X 추진단에는 AI운영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사업신청을 위한 관련 부서 신설
제10조의2(학생복지처) ①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팀, 인권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를 두고, 인권상담센터에는 학생·인권상담팀과 인성교육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인권상담센터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학생·인권상담팀과 인성교육팀의 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의2(학생복지처) ①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를 두고, 인권센터에는 인권팀을 두고, 학생상담센터에는 학생상담팀과 인성교육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인권센터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인권팀, 학생상담팀, 인성교육팀의 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현행과같음>	상위법령에 근거한 직제개편
제13조(대학·학부·학과(계열)) ① ~ ② <생략> ③ 각 대학·학부·학과(계열)에 조교 또는 실험보조원을 두며, 대학·	제13조(대학·학부·학과(계열))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각 대학·학부·학과(계열)에 조교를 두며, 대학·학부·학과(계열)의	학과장회 심의·의결사항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8.20.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학부·학과(계열)의 업무를 도운다. ④ <생략>	업무를 도운다. ④ <현행과같음>	
<신설>	**부 칙 (0000.00.0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차 재 승	이 사	최 원 준	이 사	김 [illegible]

[붙임18]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제22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2.12.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7. 대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대학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7. 대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대학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호 자구수정
<신설>	부 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9] 영남이공대학교 2026.3.1.자 교원 재임용(안)

(제23호의안 관련)

연번	대학명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역	일자
1	영남이공대학교	조건부재임용	김태열		보건의료행정과	부교수	13호봉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보건의료행정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31.02.28(5년)	2026.03.01
2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최영오		건축학과	부교수	13호봉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건축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33.02.28(7년)	2026.03.01
3	영남이공대학교	조건부재임용	윤승현		스마트e-자동차과	부교수	13호봉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스마트e-자동차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33.02.28(7년)	2026.03.01
4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황재규		글로벌교양학과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글로벌교양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5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박현숙		치위생과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치위생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6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이종민		화장품화공계열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화장품화공계열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7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김준형		소프트웨어융합과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소프트웨어융합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8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김경희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9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최채형		ICT반도체전자계열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ICT반도체전자계열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0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남승민		스포츠재활과	조교수	연봉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스포츠재활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1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정현		패션디자인마케팅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패션디자인마케팅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2	영남이공대학교	조건부재임용	임영찬		스마트e-자동차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스마트e-자동차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3	영남이공대학교	조건부재임용	김수연		글로벌레저서비스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글로벌레저서비스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4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손기복		스마트융합기계계열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스마트융합기계계열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연번	대학명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역	일자
15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이규창		사이버보안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사이버보안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 03.01
16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장은주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 03.01
17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김태현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 03.01
18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이민영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 03.01
19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엄소연		반려동물보건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반려동물보건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 03.01
20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코일션 마이클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7.02.28(1년)	2026. 03.01
21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램블린 미셸알랭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7.02.28(1년)	2026. 03.01
22	영남이공대학교	재임용	우에노 요시미		소프트웨어융합과	조교수	연봉제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7.02.28(1년)	2026. 03.01

※ 연구실적물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보건의료행정과 부교수 김태열, 스마트e-자동차과 부교수 윤승현, 스마트e-자동차과 조교수 임영찬, 글로벌레저서비스과 조교수 김수연의 경우, 임용예정일 전까지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는 조건부로 재임용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0] 영남이공대학교 2026.2.28.자 교원 명예퇴직(안)

(제24호의안 관련)

소속	직급	성명	정년퇴직일	임용일	근속년수 (명예퇴직일 기준)
부사관과	교수	김용현	2027.08.31.	2006.03.01.	20년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남창모	2029.02.28.	2002.03.01.	24년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